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66
----------	------

발의연월일 : 2021. 1. 29.

발 의 자 : 김윤덕 · 김수홍 · 김정호
신영대 · 안호영 · 윤준병
이규민 · 이상직 · 이용호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적용지역의 단위가 이전지역 내 학교 출신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인력 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해당”을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를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이전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외의 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인재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의 구분 및 범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비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지역인재 및 이전지역외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이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 ----- ----- ----- ----- <u>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u> ----- ----- ----- ----- ----- ----- <u>말한다. 이하 같다</u> ----- <u>다)</u> ----- ----- ----- ----- ----- <u>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채용하여야 한다.</u>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

②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이전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외의 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외의 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인재와 이전지역외의 지역인재의 구분 및 범위, 이전공

② ~ ⑥ (생략)	<u>공기관등의 채용비율 및 기준</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